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 전세버스 차령

- 현행 여객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 차령은 9년이며, 차령기간 만료전 2개월이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여객법 제84조제1항) 차령 연장 가능

□ 개정안 주요 내용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령은 1년을 더하여 인정해줌(별표2제1호 비고 나목신설)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부칙제1조)
- 차령 1년이 더해지는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차령이 연장(2년)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부칙제2조제1항)
- 별표2제1호 비고 나목신설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령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차령 연장(2년)이 된 것으로 봄(부칙제2조제2항)
 - *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1년이 연장되는 경우, 차령 산정은 개정 시행령안에 따른 1년을 먼저 산정하고, 이후에 2년 연장된 차령을 계산
- 이 영 시행 당시 차령 연장기간이 1년10개월 이후인 자동차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제2조제3항)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일	2020.	
연월일	(제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및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송객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2020. 0. 00.)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교를 가로으로 하고, 같은 호 비교에 나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다음 각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차령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 따른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차종
승용 자동차 운송 사업 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에 속하는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하)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 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 차
	일반택시(전기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 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 차
승합 자동차	그 밖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 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 차

별표2 제2호 가목 중 “제1호 비교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를 “제1호 비교 기록에 따라 2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 또는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장기간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1호 비교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표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 중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임시점사는 별표 2 제1호 비교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점사로 보며, 차령의 연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표 제1호의 비교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

령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같은 제2호에 따른 차령의 연장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령 연장기간이 1년 10개월 이후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차령이 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연락처

(044) 201 - 3832